

제433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4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7.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2)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5)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5)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2)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5)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0)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0)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4)
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2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3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9)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38.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5)
39.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2)
4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김학희 외 54,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42)

상정된 안건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4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4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4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4
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4
7.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4
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2) 4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45)	4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45)	4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92)	5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5)	5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	5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5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5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5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0)	5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5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0)	5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4)	5
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5
2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5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	5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5
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3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5
3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5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5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5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9)	5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3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5
38.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5)	5

39.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2)	5
4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4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
-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김학희 외 54,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42)	

(13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준환 위원님께서 야당 위원님들께도 직접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김준환 위원님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위원입니다.

제가 여덟 살 때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16년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예순셋인데 돌이켜 보면 오늘날까지 저를 사람 구실 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들은 학창 시절의 선생님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분들의 뜻과 열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무르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정훈 위원 교육위원 자격이 있으십니다.

○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의 자격이 있다라는 야당 간사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여튼 교육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7.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2)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5)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5)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92)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5)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0)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0)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4)
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2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3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9)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38.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5)
39.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2)
4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김학희 외 54,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242)

(13시36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41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고민정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17일 23일, 세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한 60건의 안건 중 2건은 원안 의결, 4건은 수정 의결, 2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9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9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호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차별·모욕·비하 목적이 있거나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이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초·중등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일부 문구를 보완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 외의 법안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지금 이 법안 다 토론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으세요?

○조정훈 위원 법안별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 토론을……

○위원장 김영호 전체 토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김영호 5분 드릴게요.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저희 당 위원은 반대를 한 법안인데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로론합니다.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또 교육환경의 보호에 관한 균형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만 또 고민정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수정안을 내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헌법적 가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앞에서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만 그 과정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것 또한 저희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무수히 얘기했습니다만 집시법에 이미 학교 앞의, 학교 주변지역의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뭐가 달라졌느냐 봤을 때는 결국은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하 확정기 북 뺑파리 등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했고 욕설 폭언 비속어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논쟁이 된 지점은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별에 대한 정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 혐오를 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차별 등의 해석이 주관적 임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보내 온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른 집시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므로 개별 법률 간 정합성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서의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형벌 대상이 사람이므로 처벌 대상이 집회 주최자인지, 참가자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행위자만을 처벌하는지,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경찰청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장한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과잉입법이고 헌법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되 제9조의2 2항의 ‘1.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 위원님들은 거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짐작건대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이 법을 발의했는지, 최근 일어났던 소위 반중 집회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신가 하는 짐작을 하는데, 그것이 교육 상임위에서는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반중 집회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학습권의 보호는 존중합니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습권이 보호된다는 전제가 보장된다면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의 자유는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야 될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권에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법에 발생하는 200m 안에서도 정치적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시위는 허용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검토하셔서 교육 상임위의 합의 처리의 전통을 지켜서 이것을 보류하시든지 아니면 9조의2 2항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집단을 차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고민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법안이 여야 간에 합의 처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랐고 그러나 그날 부득이하게 표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전원 다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도 기록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가치를 위배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법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이것은 무조건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앞에 있는 200m라는 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해서만큼은 이와 같은 집회·시위를 자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실제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술집이나 도박장 같은 것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익의 이익보다 공익의 이익이, 어떤 게 더 부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것이 법에도 정해져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썼느냐 하면요 이 법에는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일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앞에서 문제가 되는 시위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학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게끔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여기가 학교 200m 구역 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학교 앞에서 집회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경찰서에만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와 경찰서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학교 앞에서만은 혐오 집회는 없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를 빼자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국민의힘의 의견을 백분 받아들여서, 원래는 혐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미 다른 법안에 있는 내용들을 차용해 온 것입니다. 차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역시 차별에 대한 정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이유로밖에는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도 있는 법안으로 충분히 규제되고 있는데 왜 이런 과잉입법을 하냐고 하셨지만 실제로 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혐오 집회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현실이고 실제로 그것이 격화되어서 물리적인 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걸 국회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적 손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꼭 해야 되겠고 차별과 모욕과 비하가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되고 집회·시위의 자유에 해당이 돼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으면 학교 바깥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의 공간들은 그리고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곳은 술집을 차리고 싶고 도박장을 차리고 싶은 일반 민간인들도 교육에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에서만은 영업을

아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최소화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조문이 첫 번째 개정안 때보다도 많이 변화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 법안소위 하셨던 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혐오하는 것은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학교 앞에서만은 없어지게끔 어른들이 부지런하게 법안과 제도를 고쳐 보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지막까지, 아직은 법사위도 남아 있고 본회의도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변화의 시도들과 마음을 먹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말씀하신 것이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이 법을 잘 살펴봐 달라라는 말씀으로 저도 받아들이는데 저도 관련 입법을 대표발의했잖아요. 사실 저는 제 경험상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였거든요.

사실 스쿨존에서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해 줘야 되는데 재작년 12·3 계엄 터지고 나서 탄핵 국면 때 진보든 보수든 광화문 일대에서 많은 집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인사동 가는데, 아마 거기도 스쿨존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스피커가 달린 모 차량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설을 막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갔던 어머니가 아이의 귀를 막고 있는 장면을 제가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좌진들한테도 분명히 법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런 법과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쿨존에서만은 어떤 집회도,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하지만 아이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교육적으로 나쁜 거친 말들이 이렇게 막 난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정훈 간사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조정훈 간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헌법정신에 맞춰서 말씀 주셨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저도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김민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김민전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위 도중에 나오는 각종 욕설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받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법안소위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차별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법에서는 굳이 특정 국적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 이 부분만 규정을 해야 되느냐, 다양한 차별을 다 적자.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시위라고 하는 게 사실 요즘은 조금 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CCP OUT이라고 하는 시위도 있고 양키고 홈이라고 하는 시위도 있지만 그 시위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시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종류의 시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욕설이나 또 폭력, 민노총 시위의 경우에는 폭력들도 상당히 있었습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 국적 차별만 혹은 민족 이런 부분만 집어넣을 것이냐, 저는 그것이 오히려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법안소위에서도 했는데요 지금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별적인 언어의 시위가 학교 근처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별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하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환경법에서 200m 말씀을 지금 고민정 간사님도 하셨는데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적인 시설이고 시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회적으로 지나가는 시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m라고 하는 규제가 너무 지나친 규제 아니냐, 일반적인 교육환경안전구역 스쿨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때 국회나 이런 시설들에서는 100m 하다가 100m도 지금 위헌판결이 난 걸로 현재에서 위헌이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0m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학교 앞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시위도 아니고 지나가는 시위라고 했을 때는 지나치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계세요?

○김준혁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도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나름의 생각과 판단 또 사상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고전 이야기 하나 해 보도록 하지요.

혹시 장관님 차관님, 경세유표 읽어 보셨나요? 좀 어렵지요. 그렇지요? 경세유표 서문에 다산이 이렇게 써 놔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예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예가 사라지고 나서 법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법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法)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를 보자면 ‘물 수(水)’ 변에 ‘갈 거(去)’ 자인데 물처럼 흘러가는 것들, 그러니까 원래 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것은 상식인 거지요. 인간 사이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상식이 사실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조항이거든요. 강제조항이라고 하는 것의 원칙은 죄형주의, 죄를 줘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늘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근대 사회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통제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제 민주사회에서 법은 거꾸로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대항해서 힘없는 사람들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법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에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들, 해외에 나가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애니깽, 멕시코 가서 회초리를 맞으면서 채찍을 맞으

면서 일했던 그분들, 하와이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고국에 보내서 독립운동을 하게 하고 교육운동을 하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 자식들이 그 현장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지요. 저는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 힘없던 시절에 가난하던 시절에 그 많은 설움을 해외에서 받았고 그 자녀들이 그 고통을 이겨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잘산다고 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우리하고 적대적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 국가들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똑같은 그런 비극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저와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갖고 있는 가치가 인간의 평등과 평화, 인류애적 측면에서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국민의 힘 위원님들께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작은 가치 아니, 더 클 수 있는 가치를 헤량해 주시고 이 법에 함께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잘 들었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말씀은 아마 여야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세요.

○서지영 위원 교육환경 보호라는 명분으로 집회·시위를 처음에는 소위 혐오 집회를 금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률안이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가라는 발생 원인을 살펴봤을 때는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표는 반중집회 금지법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중집회에 대해서 ‘깡판 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부터 모든 정부부처가 득달같이 반중집회에 대해서 규제해 왔고 억압했지요. 그래서 명동에서 하던 집회가 다른 데로 밀려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괴담과 선동들에 대해서는 왜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침묵하셨습니까? 해리스 대사 참수대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고 문제 제기 안 했습니까, 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지요, 2019년도에. 그런 건 얼마나 혐오적인 표현이고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의 민주당이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문제 제기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광우병 괴담 그것이, 그 국가의 사람들이 그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느꼈을 그 공포 모욕에 대해서는 왜 지금 어느 누구도 반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반중집회에 대해서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 정권의 경찰 모두 나서서 다같이 규제하고 밀어내고 반대하고 급기야 법안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정말 교육환경 보호라는 근본적 취지보다는 저는 철저하게 정치적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좀 균형감 있게 인권의 문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다른 집시법에서도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가면서 왜 이런 목적으로 굳이 이런 법안들을 내서 이 논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저는 적당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 위원 간단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어느 정도 충분한 의견을 해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표결을 하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 보면 이 법안 자체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목적 지향적인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요. 포괄적 법안이지요,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어느 한 국가 한 인종을 특정합니까, 이것? 그렇게 협소하게 이 법안을 해석하고 목적 지향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의도가 드러나는 거지요, 오히려.

그리고 이 법안 자체를 보면 우리가 집회·시위에 대한 법률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헌법적 가치지요, 집회·결사의 자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출판의 자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해 주고 충분히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도 서로 길항관계로서의 존속가치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법률이 이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왜 의도성을 가지고 이 법률을 협소하게 해석하느냐.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너무 이 법안에 대한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김준혁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 가야 되는 나라예요. 산업적인 면에서 이게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듯이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와 기준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가 선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다 논의돼서 제가 한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법안은 의미가 있는 법안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잘 들었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대표발의했지만 저의 법안 대표발의 배경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야당 위원님들이 조금 판단하고 있는, 혹시 이런 일에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저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의견 일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 처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법률안들은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4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거지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우선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시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2인 중 찬성 여덟 분, 반대 네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8항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3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5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0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이의 있습니까, 32항?

○조정훈 위원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발언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어제 통과된 법안인데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저회는 일명 8만 원법이라고 부릅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 자체

는 동의합니다만 아무리 검토해 봐도 실효성 측면에서도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감면되는 금액이 1인당 연간 약 8만 원입니다.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과연 이 금액으로 우리나라의 학생이 수도권 대학 대신 지방대학을 선택할지라는 질문 앞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기준입니다. 같은 소득구간에서 동일하게 대출받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거주가 아닌 등록 대학,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고 수도권 대학생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학자금대출의 부담이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갈라치기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더 들어가면 수도권에 있는 똑같은 경제적 조건에 있는 학생들도 다 8만 원 이자 면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38억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 1년 예산이 106조 원입니다. 이 106조 원의 정말 영점 몇몇 %도 안 되는 38억만 더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 졸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데 기어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뉴스를 보니 곧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 25조 원 규모의 추경에서 약 38억 원만 떼고 서울에 있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 졸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도 같이 덜어 주자는 주장이 왜 수용이 불가한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8만 원씩 갚아 주는 이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서울 수도권 대학을 포기하고 지방대학으로 갈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비현실주의자고요. 그러면 그 정책도 달성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청년들을 갈라치기 하는 법률을 왜 우리가 굳이 통과시키는지, 차라리 정말로 어렵게 공부하고 학자금대출에 고생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을 위해서 예산 38억 원 더해서, 이제 마침 추경도 오니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하자는 제안이 어제 법안소위에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38억입니다, 겨우. 왜 수도권과 지방 대학생들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법안이 여기서 통과돼야 됩니까?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민주당식 8만 원 법은 정말로 효과가 없습니다. 청년 갈라치기 법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효성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통과시켰던, 김문수 의원님 법안으로 기억을 하는데 연간 10만 7000원의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이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실효성이 없다, 10만 원 가지고 누가, 대학생이 좋아하겠냐라고 주장하시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주장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만 원 가지고 누가 좋아하겠냐?

그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정부는 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찾아서 메워 주자는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려면 지난번에 저희가 통과시켰던 10만 7000원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선택적인 판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두 번째로 갈라치기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모든 정책은 다 갈라치기입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어떻게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역을 살려 내기 위해서 지역의사제라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학금제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것 이미 말씀드렸고요. 전액 장학금도 있고 일부 장학금도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다 보니 그러면 학자금 상황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수도권보다 인프라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것들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니 그거라도 조금 해소 주자 하는 의미에서 나왔던 것인데 이것을 갈라치기라고 해 버리면 모든 지역균형발전은 다 갈라치기 법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에 있는 모든 정책들을 다 퍼 줄 수 있으면 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을 해 오셨으면야 이런 고민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직전이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요.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무너져 내린 게 많습니다. 유보통합 그리고 대학 문제들, 글로컬, 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사실은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촉박합니다.

그런데 앞서 혐오 집회에 관련된 법안도 그렇고 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황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게 무슨 진보 보수 간의 서로 정쟁의 거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특히나 이 학자금 상황은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인데 이것을 갈라치기라는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 대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초중고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원들을 해 줄 수 있을지 사각지대는 어디가 있는지를 더 많이 찾아내서 핀셋 정책들을 더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교육부에 조금 말씀……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국가의 균형발전, 지방대학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도 김문수 의원님께서 이런 법안들을 제출하셔서 아마 연간 10만 원 정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또 고민정 의원님께서 연간 8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각각의 법안들을 보면 아마 국가 교육재정에 비하면 큰 재정적 소요는 아닐 겁니다, 그때그때. 그러면 또 몇 달 뒤에 수도권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자 탕감 법안을 내면 또 수용하고 내년에 또 제가 어떤 지방 학생들 이자 탕감 법안을 내면 또 수용하고 그렇게 30억씩 40억씩 50억씩 끊임없이 그것을 수용해 가다 보면 교육부는 이

러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설계하고 재정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지방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막고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1년에 몇만 원의 이자 탕감을 받는 것보다는, 졸업해서 1년에 10만 원의 이자 탕감을 받는 것보다는 이 학생들이 지방대학을 졸업해서라도 1년에 100만 원의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 모두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끊임없이 우리끼리 이렇게 시혜적인 정책으로 쫓쫓쫓 우리가 생색내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정말 본질을 벗어나는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 또 지방에 대한 애정으로 이런 법안들을 개별적으로 내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개별 법안을 낼 때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지 않지요. 40억씩 30억씩 50억씩 들어가지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교육재정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지방대 학생들을 돕는 것인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유사 법안 내면 또 여러분들 수용하실 겁니까? 제가 유사 법안 내면 또 수용하실 겁니까? 저야 학생들한테 인기 얻겠지요. 당연히 도움되지요, 몇만 원이라도. 정말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창의적인 정책들로 지방대를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방대학 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데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수립할 것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문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문수 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권도 더 확대하자는 겁니까? 지금 서로 두 말이 같이 막 충돌하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진짜 대학까지 학비든 이런 것들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차츰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한 하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수도권보다도, 물론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수도권도 법안을 내서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우선 지방, 우리 같은 지방에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 하고 예산의 범위가 보완되면 또 수도권도 하시고 이렇게 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고민정 간사님의 법안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타깃을 해 가지고, 이게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김민전 위원 우연이지요, 우연. 그것은 프레임입니다.

○김문수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너무 억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스스로

앞뒤가 안 맞아요, 하지 말자고도 했다가 수도권도 하자고 그랬다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히…… 이것 좋은 겁니다, 우리 지방대학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이 앞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10만 원 50만 원 소액 대출하는 데 줄을 서요, 청년들이. 그것을 겪어 보지 않거나 자기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서 그럴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체되고 누적되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작은 일로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해 나갔으면 좋겠고 너무 고민정 간사님 법안에 관해서 타깃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보기 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 주시지요.

○김문수 위원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죄송하지만 지금 신청을 김준환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하셨는데 김준환 위원님 하시고, 여야의 형평성 때문에 김민전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 발언을 백승아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김준환 위원님.

○김준환 위원 논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일까 봐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8만 원이라는 부분이 시혜이기도 하고 비록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바깥에서 시골에 살면서 여의도를 잘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서 서로 말이 갈라지고 거칠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용어 사용에서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따뜻하게 ‘이런 점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한다. 이런 점은 좀 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에게 있어서 존중과 예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들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웃음소리)

○조정훈 위원 교육위가 얼마나 예의를 갖춘 상임위인지 이제 느끼실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환 위원님, 인품이 아주 정말 훌륭하셔서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저도 좀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두 분의 말씀이 전혀 일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10만 원은 괜찮고 8만 원은 안 되냐’ 얘기하시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좀 생각해 보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두 분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대 살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으니까? 다 동의할 텐데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대를 나왔지만 나와서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구하지 못했지만 서울에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8만 원을 감면해 주고 그러나 서

울에서는 학교를 다녔지만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찾은 사람들은 감면이 안 되고 이룬다라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쉽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는 항상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조 간사님이나 또 서지영 위원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6개월 만에 체계가 잡힐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말 다양한 케이스에 어떤 분들이 적용받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테니까 좋은 거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게 불편함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그때 법안소위 때도 기권을 했었던 것이고요.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일단 지금 이 논쟁을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마치 지방대 학생들에게 8만 원을 감면해 주는, 8만 원을 깎아 주는 또는 8만 원을 주려는 법안인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에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대 다닌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찾아 보니 이자를 면제하는 대상에 포함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금액이 8만 원이었던 것이지요, 8만 원을 애초에 딱 설정을 해 두고 깎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찾아 보니 이자 면제라도 해 주자라고 된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예산이 충분했다면 좀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주면 참 좋았겠지요.

저는 윤석열 정권 때 잊혀지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AIDT 교사 연수를 위해서 쓴 3818억 원, 오죽하면 제가 지금까지도 액수를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데 쓸 돈을 이렇게 필요한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저희 당이 또 이번 정부가 그러면 지방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느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거점국립대 모두에게 이 예산을 처음부터 균등하게 주지는 못하지만 연구중심대학교 3개교 선정해서 400억씩 줄 겁니다. 또 AI 거점대학 3개교 선정해서 100억씩 줄 거고요. 국립대학 실험기자재 확충 증액 741억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예산으로 총 4777억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엉뚱한 데 쓰고 이런 데에 왜 못 도와주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거점국립대학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써서 계획적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8만 원 그깟, 잘못 들으면 청년들이 ‘우리 지방대출신들 8만 원 먹고 끝나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짚는 거예요. 8만 원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찾아 보니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자 그렇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8만 원이 된 것이지 8만 원을

애초에 딱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저는 국회에 와서 느끼는 게, 처음부터 다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크게 처음부터 주지 못하니까 애초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재작년도 저희 야당 시절이 생각났는데 그때 학자금대출 구간 늘리자고 야당은 계속 주장을 하고 또 여당은 재정 당국의 여건상 힘들다고 해서 굉장히 줄다리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여당이 됐잖아요. 오히려 야당은 수도권까지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서, 하여튼 2년 전 저희의 호소를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됐는데……

○조정훈 위원 그걸 저희가 듣고 반영해서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래서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서울도 학자금 상환 때 이자 면제도 함께 검토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표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록으로 남기겠……

○조정훈 위원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냥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조정훈 위원 아니, 저는 동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이미 기록에는 반대 기록을 남기셨는데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표결을 하면 기권도 기록이 됩니까? 그런데 안 그러면 만장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표결을 안 하시면?

○위원장 김영호 다만 속기록에는 야당 위원님들이 일부 문제 제기를 하고 기권 내지……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세요? 그러면 표결로?

○조정훈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기권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니까 이 자체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해 달라는 서울까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조정훈 위원 예, 맞습니다.

○서지영 위원 아니, 저는 좀 취지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2인 중 찬성 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40항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한 1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에는 그동안 세 차례의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서 마련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학생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고등교육법과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교원지위법 등 모두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행동중재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학교 등에 대해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 특별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1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김문수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법안소위 때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법안 심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법안소위가 사실 우리 일정상 기록하지는 않은데 앞으로 한두 번 더 법안소위를 개최할 수 있나요?

○고민정 위원 예.

○조정훈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김민전 위원 위원장님 너무 잘하세요.

○조정훈 위원 너무 모범생이야.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고민정 위원님도 항상 야당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국회의 약간 대치 국면 속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여야 위원님들이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안소위에 정말 충실히 임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방선거가 6월 3일이니까 그 안에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을 쪼개면 민생법안 또 학생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잘 처리해 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정 간사님 조정훈 간사님 두 분께 감사드리고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법안 심사 집중력 있게 잘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고민정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준혁 김준환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조정훈 진선미

○출장 위원(1인)

강경숙

○청가 위원(3인)

김대식 김용태 문정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학교정책실장 장홍재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대변인 정병익

정책기획관 김홍순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